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구단103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조합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4,412,510원, 지방교육세 8,506,050원, 농어촌특별세 8,380,650원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redacte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B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1. 30. [redacted]남 [redacted]군 C 외 5필지 지상에 주유소 및 제반시설(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설치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2012. 2. 13. [redacted]군 D, E, F 토지를 매수하여 2013. 12. 10. 그 지상에 판매시설, 창고 등(이하 건물과 대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redacted]마트'라 한다)을 건축한 후 이를 판매시설로 사용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및 [redacted]마트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유소 및 [redacted]마트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였다.

라. 한편, [redacted]남도지사는 2017. 6.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7.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 전체 및 이 사건 [redacted]마트 중 농산물, 축산물 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공산품, 수산물 매장과 임대매장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1]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과세예고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8. 11. [redacted]도지사에게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

1) 이 사건 [redacted]마트와 관련하여서는 [redacted]마트의 전체 면적 중 농산물, 축산물 매장은 면세대상으로, 공산품, 수산물 매장과 임대매장은 과세대상으로 각 정하고, [redacted]마트 부지 및 사무실, 공용부분, 창고동 등은 면세면적 대비 과세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6

으나 전라남도지사는 2017. 9. 5. 원고의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게 취득세 144,412,510원, 지방교육세 8,506,050원, 농어촌특별세 8,380,650원 합계 161,299,210원을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2.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 및 [redacted]마트는 [redacted]조합법과 원고의 정관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에 해당하여 원고의 고유업무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주유소는 농민들인 조합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면세유를 공급하는 등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원고의 정관상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그 이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바, 따라서 이 사건 주유소 및 이 사건 [redacted]마트 중 공산품, 수산물 매장과 임대매장 부분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유소 전체와 이 사건 G마트 중 일부 부분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6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redacted]남 [redacted]군 H 및 같은 군 I면을 관리지역으로 하는 B조합이고, 이 사건 주유소 및 [redacted]마트는 [redacted]남 [redacted]군 H에 각 위치하고 있는데, 2014년경 [redacted]남 [redacted]군의 인구는 약 47,000명, 같은 군 H의 인구는 11,650명, 같은 군 I면의 인구는 1,740명이고, 원고의 조합원 수는 3,076명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G마트를 신축하기 이전부터 [redacted]남 [redacted]군 J 및 같은 군 K에서 각 농·축산물, 공산품 등을 판매하는 [redacted]마트 2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redacted]마트는 기존에 원고가 운영하던 위 각 마트에서 약 1㎞ 내지 7㎞ 정도 떨어져 있고, [redacted]남 [redacted]군 H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redacted]마트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규모의 대형 생활용품 판매점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3) 조합원의 이 사건 [redacted]마트 이용 비율은 2014년도 전체 매출액(113억 800만 원) 중 16.4%(18억 5,800만 원), 2017년도 전체 매출액(179억 2,600만 원) 중 10.9%(19억 6,100만 원), 2018년도 전체 매출액(195억 8,100만 원) 중 10.5%(20억 4,900만 원)에 해당한다{준조합원의 이용 비율은 전체 매출액 중 2014년도 8.7%(9억 8,700만 원), 2017년도 7%(12억 5,300만 원), 2018년도 6.4%(12억 5,000만 원)이다}.

4) 이 사건 [redacted]마트의 총 면적은 3,219.43㎡인데, 피고는 그 중 농산물, 축산물 매장 등 면세대상면적을 2,209.65㎡로, 공산품, 수산물 매장과 임대매장 등 과세대상면적을 1,009.78㎡로 각 산출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6

5) 이 사건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는 [redacted]남 [redacted]군 H에는 위 주유소를 포함하여 9개의 주유소가 운영 중이고, 그 중 면세유를 판매하는 곳은 3곳에 해당한다.

6) 이 사건 주유소의 2012년 전체 매출액(81억 4,200만 원) 중 조합원의 매출액은 35억 9,100만 원(44.11%), 면세유 매출액은 10억 5,500만 원(12.96%)이고, 2013년 전체 매출액(78억 7,100만 원) 중 조합원의 매출액은 35억 1,500만 원(44.66%), 면세유 매출액은 10억 600만 원(12.79%)이다.

7) 행정안전부가 2010. 8.경 마련한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이하 '이 사건 운영요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L조합의 경우 ① '농산품 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목적사업인 판매사업에 해당하여 비조합원의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감면하고, ② '공산품 매장'은 조합원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목적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도시지역은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현황 조사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며, 읍·면지역은 (지역 농협이 일반적으로 읍면에 기반을 두고 경제적·사회적 열위 계층인 농민의 권익보호를 취지로 설립·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7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14조 제3항에서 [redacte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6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또한 L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이 그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366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유소 및 이 사건 [redacted]마트 중 공산품, 수산물 매장과 임대매장 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주유소 및 [redacted]마트는 [redacted]남 [redacted]군 H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는 같은 군 H 및 I면을 관리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의 조합원은 위 관리지역 전체 인구의 약 23%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위 관리지역에서 이 사건 [redacted]마트를 비롯한 3개의 대형 생활용품 판매점과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②[redacted]남 [redacted]군 H 내에는 원고의 이 사건 [redacted]마트와 같은 대형 생활용품 판매점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바, 원고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2개의 대형 생활용품 판매점 외에 추가로 이 사건 [redacted]마트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6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마트 중 공산품, 수산물 매장과 임대매장 부분이 이 사건 ■마트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③ 또한 ■남 ■■군 H에는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한 9개의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고, 면세유를 판매하는 곳도 3곳이나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유소의 전체 매출액 중 면세유의 매출액은 약 13%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농민들인 조합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주유소가 원고 조합원들의 영농생활 및 생활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G마트의 전체 이용객 매출액 중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조합원의 비율은 약 16%에서 10% 정도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준조합원의 매출액을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약 25%에서 17% 정도로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⑤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 및 ■마트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동일한 판매조건, 판매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유소 및 이 사건 ■마트 중 공산품, 수산물 매장과 임대매장 부분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기보다 영리를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운영요령은 그 내용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훈령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운영요령 중 '읍·면지역의 공산품 매장'과 관련한 내용은, 읍·면지역은 대부분 농촌으로 구성되어 주민 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6

수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 조합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읍·면지역에는 일반상업시설이 부족하여 조합원이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B조합이 위와 같은 조합원에게 공산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사건 주유소 및 [redacted]마트가 위치한 H 지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 및 [redacted]마트 이외에도 그와 유사한 규모의 주유소와 대형 생활용품 판매점이 다수 존재하여 이 사건 운영요령이 예정한 읍·면지역과 그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6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14조(L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redacte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구 [redacted]조합법(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6

니 된다.

제13조(목적)

B조합(이하 이 장에서 "B"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B의 구역에 주소, 거소(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B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B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B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B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준조합원)

① B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B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B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7조(사업)

① B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B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6

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세대)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B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B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A조합 정관**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나목·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 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 준조합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끝.